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58호 2015. 6. 3.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397호 재난방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 정선군 공고 제2015-428호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397호

재난방재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에 위치한 정암사 내 방재시스템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2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전통사찰인 정암사 내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전통사의 보호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4. 공고기간 : 2015. 5. 22 ~ 6. 10.(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설치장소 : 정암사 경내 14대(종무소, 요사채, 관음전, 삼성각 등)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5. 22 ~ 6. 1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정선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우편 : (우)233-701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 033)560-254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문화예술팀 (☎033-560-25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불입

의견서

사 업 명		정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H.P)	()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재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5-428호

정선군도로점용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정선군도로점용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도로법(법률 제12639호 2014. 05. 21)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07. 14)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개정(안 제2조)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 제4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진출입로 등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산정기준 적용

다. 도로점용료 반환 개정(안 제4조)

- 도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일반국도 외의 관한 점용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 2015. 06. 04 ~ 06. 23(20일)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출 및 문의사항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 .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099

○ 문의 전화 : 033-560-2486

붙 임 1) 정선군 도로점용징수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현행 조례 1부. 끝.

붙임 1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취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66조(점용료의 징수) ① ~ ③ (생략)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 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 ④ (생략)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
 례로 정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
 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
 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붙임 2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3.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 다만,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